

##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방법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구 분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4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교육행정 (장애인)	9급	6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3	
	사 서	9급	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보 건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전 산	9급	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 업 (일반기계)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급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축)	9급	7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3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위: 명)

시험방법	선발예정			시험과목
	구분	계급	인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고졸임용)	공업 (일반기계)	9급	1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1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9급	1	1차: 물리 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9급	3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전	9급	2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II.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7과목)	9급(5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40분 (10:00~12:20)	100분 (10:00~11:40)	60분 (10:00~11:00)	40분 (10:00~10:40)

2. 제3차 시험: 면접시험 [제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III. 응시 자격

1.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 험 명	응시연령 (생년월일 기준)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	18세이상 (2002.12.31.이전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li> <li>-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li> <li>-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li> </ul>
공개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20세이상 (2000.12.31.이전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	18세이상 (2002.12.31.이전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고졸임용)	18세이상 (2002.12.31.이전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임용)에 한하여, 조기입학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03년 1월~1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2021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을 따릅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임용)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사서·전산·기록연구 직렬에 응시하는 사람과 경력 경쟁임용시험 중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임용)에 응시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이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4.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사서·전산·기록연구 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해야 함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록연구	기록관리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 ○ 운전 직렬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p>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20.3.2.) 이전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군 복무기간중 대형버스 운전경력포함, 단, 이 경우 군(軍)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li> </ul> <p>② 2017.3.2.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p>
---

- **운전직렬 응시대상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2020.3.23.(월) 09:00 ~ 2020.3.26.(목) 18:00까지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로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변동 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 ③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붙임3 서식1](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붙임3 서식2](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20.3.2.) 이전 경력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경력 확인용)
- 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간 : 2017.3.2. ~ 원서접수기간 내

-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4.9.(목)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사·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서류 제출” 과 별도로 ‘Ⅵ.응시원서 접수’ 의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졸 임용[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21년 2월) 중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용예정직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해당(관련) 학과
공업(일반기계) 9급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일반토목) 9급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추천 및 응시 불가
- 2020.1.1.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추천 및 응시 가능

-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2020년도 충남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재학중인 고등학교의 학업 계속사유는 제외)

##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단, 교육행정직렬에 한함)

- 가.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참조]**
- 라.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받아야 함

##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단, 교육행정직렬에 한함)

-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0.4.2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나.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신청시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신청],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는 불가함)

## IV. 문제 출제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 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부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공개 경쟁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교육청	공개 경쟁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비공개	회 수
		경력 경쟁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공동출제 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 ※ 2020년 고졸(예정자) 특성화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 차 병합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공 업 (일반전기)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응용역학개론(2009 교육과정상 ‘고교역학’ 교과에서 출제) 측량(2009 교육과정상 ‘측량’ 교과에서 출제)
		시 설 (건축)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위 시험과목 중 응용역학개론, 측량을 제외한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 V. 시험일정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 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 시험	2020.6.1.(월)	2020.6.13.(토)	2020.7.10.(금)
면접 시험	2020.7.10.(금)	2020.7.16.(목)	2020.8.3.(월)

- ※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2021.5월 중으로 변경·시행예정입니다.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등 시행계획 안내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0.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cn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I.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1. 원서접수방법

-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접수상담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접수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은 상담이 제한됨
  - 임 용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41-640-8022, 8029)
  - 시스템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041-640-1912)

2. 원서접수 기간 : 2020.4.20.(월) 09:00 ~ 2020.4.24.(금) 18:00까지 (기간 중 24시간 접수)

3.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0.4.27.(월) 18:00까지

### 4.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기록연구사 7,000원)
  - ※ 소정의 처리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5.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

- 사진규격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해상도 100dpi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 ※ 모자나 색안경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4매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6.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교육행정, 사서)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시 수수료가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마감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서접수 시 응시자는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이후에 부여됩니다.
  - ※ 응시표와 접수증은 다르며, 접수증은 접수완료 후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온라인채용시스템’ 에서 2020.6.1.(월)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수험생은 응시표 출력기간(2020.6.1. 이후)에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시험장, 선택과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별도 확인합니다.
  - ※ 단, 9급 운전직렬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증빙서류를 2020.3.23.(월)~2020.3.26.(목) 까지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여야 합니다. (운전직 : 세부사항 “Ⅲ-4” 나항 참조)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7~10], 익스플로러 버전[7.0~11.0]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VII.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1. 대상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장애인), 사서, 전산, 시설(건축)]

### 2.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
  -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3. 합격자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VIII.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1.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li>•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직류)별 가산점 1개)</li> </ul>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0.5~1% 가산(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3~5% 가산(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모집단위별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집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가점 적용)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고,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3.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가.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렬 제외)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록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기록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9급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 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삭제(2019. 6. 18.) [시행일 : 2021.1.1.]

나.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변호사		5%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3%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3%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3%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5%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5%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3%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3%
	기능사	식품가공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5%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5%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나.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함
-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각 과목 40%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위의 가산 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IX. 합격자 결정

### 1. 필기시험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2. 면접시험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우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 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 와 “미흡” 외의 경우

### 3.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4.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X.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1.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등)에 임용합니다.

### XI.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 순서입니다.
2. 응시희망자는 주소지 및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선택과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수정 및 변경 불가

5.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09시20분)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당일 09시20분부터 시험장 시험실 건물을 출입할 수 없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간을 준수하여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태블릿 PC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스마트시계, 스마트안경 등)를 지참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지참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는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지에 이를 사용한 경우, 그 문항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20.6.1.(월)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 및 지참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10.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1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대학교 재학 등)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단, 고등학교 재학 사유 제외)
13.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도 충남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예정)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자치단체(시·도) 및 임용권자가 다른 타 기관(대학 등)으로의 전출이 불가합니다.
15.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16.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지 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 응급상황일 경우 중도 퇴실자는 시험종료 처리함
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 8029  
○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붙임 1. 2020년도 충남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3. 운전직렬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확인서(서식)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